
임금체불 근절 대책

2025. 9. 2. [화]



관계부처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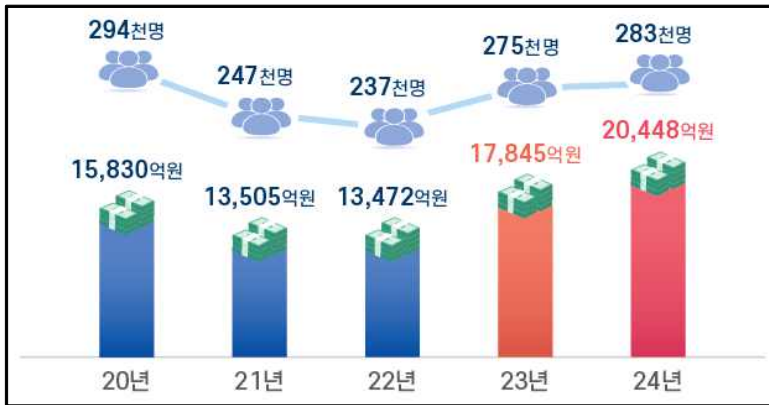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현황 및 문제점	1
1. 임금체불 현황	1
2. 임금체불 증가 원인 분석	2
II. 임금체불 근절 주요 대책	4
1. 단기 집중 핵심과제	5
2.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	8
3. 상습체불 제재 강화로 경각심 제고	9
4.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	10
III. 추진 계획	11
붙임1. 추진일정(안)	12
붙임2. 임금체불 청산 주요 현황	14
붙임3. 「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」 주요 내용('25.10월 시행)	15

I. 현황 및 문제점

① 임금체불 현황

- **(총괄)** 체불임금 총액은 '24년 최초로 2조원 상회(2조 448억원), 피해노동자(체불건수)는 28.3만명



임금체불피해노동자(천명)
임금체불총액(억원)

- '20년 이후 체불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, '23년 건설업 경기부진 등을 계기로 체불규모 증가 추세로 전환
- '25.6월(누적) 11,005억원(전년동기 대비 5.5% 증가)으로 역대 동기대비 최고치 → 체불임금 증가추세가 '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**(업종별)** 제조업(3,015억원, 27.4%), 건설업(2,292억원, 20.8%), 운수창고통신업(1,766억원, 16%) 順, 제조·건설업이 체불총액의 약 50% 차지('25.6월 기준)
- **(규모별)**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.9%(7,358억원), 체불피해노동자의 약 80%가 집중



〈 업종별 임금체불금액(억원) 〉



〈 사업장규모별 임금체불금액(억원) 〉

- **(외국인)** 체불액(855억, 7.8%, '25.6월 기준) 전년 동기 比 51.4% 증가

* ▲ (체불금액) 외국인(855억, 7.8%), ▲ (체불인원, 비중) 외국인(16,994명, 12.5%)

- **(체불사유)** 일시적 경영악화, 도산·폐업 등 다층적 원인으로 발생, 소수의 상습체불 사업주가 체불액의 높은 비중을 유발

임금체불의 주된 요인은?



하나의 분기에서만 체불이 나타난 사업체 비중은 74% ('16~'24년 전체)
→ 일시적 경영난이 체불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 가능



상습체불사업주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13% (7,200여명) 에 불과,
체불액 기준으로는 70% 차지

- **(체불청산)** 청산율은 최근 5년 80% 내외 유지 → 신속·적극적 청산 지도로 올해 청산율은 약 85%('25.6월)까지 상승 추세

* (연간 청산율, %) ('20)79.2 → ('21)83.7 → ('22)84.3 → ('23)79.1 → ('24)81.7

② 임금체불 증가 원인 분석

- ❖ ①업황, 경기 부진 등 **경기영향** + **임금수준 상승** 따른 기저효과 영향과 함께,
②**사용자의 경각심·인식부족** + 체불 발생이 쉬운 **산업구조적 요인** 등도 존재

① 임금 총액은 증가, 체불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 → 체불규모 증가

- 그간 강제수사 활성화, 감독 강화 등 체불감축에 집중하여, 체불건수*(피해노동자 수)는 감소 추세

* (천명) ('19)345 → ('20)294 → ('21)247 → ('22)237 → ('23)275 → ('24)283 → ('25.上)136

-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임금총액*이 체불총액 증가에 영향

* (조원) ('18)580 → ('19)617 → ('20)627 → ('21)670 → ('22)720 → ('23)761 → ('24)805

-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*은 여전히 미약

* 다른 범죄와 임금체불의 경중에 대한 인식 비교(일반국민 1,000명 대상 조사, '25년)

- 일반국민은 '체불'을 사기 다음 중범죄로 인식하는 반면,
(사기(35.9%) → 체불(28.7%) → 횡령(20.0%) → 절도(15.4%) 順)

- 사업주는 체불을 가장 중한 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(18.4%), 가장 비율이 높은 사기(42.5%)와 격차도 큼

② 건설 등 일부 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→ 구조적 체불

- 비용 절감 목적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만연, 하청 영세업체로 갈수록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(단가 인하, 공제 할당 등) 관행
 - 노무비 재원은 우선 감축 또는 후지급되는 등 누수
 - * (사례) A건설기업 대표, ○○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로 수주받고, 수주금액의 30%를 공제한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 → 총 24명, 58백만원 체불 발생
- 특히, 건설업에서는 시공팀장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따른 중간착취로 임금체불이 발생
 - * (사례) A팀장(소위 '오야지')이 건설회사로부터 일부 공정 불법 재하도급 → 시공대금 수령 이후 A팀장이 사용한 노동자 임금 미지급 + A팀장은 자신도 건설회사의 노동자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

③ 체불 적발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미미 → 상습적 체불 행태

- 적발 시 처분은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*에 그치며, 사건 종결 전 청산 시 반의사불벌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다수
 - *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% 미만인 사건이 77.6%, 반의사불벌 처리비율 46.6%(24년)
- 노동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반면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을 악용해 임금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금액을 감액하여 합의 유도하는 경향
- 고액 체불 반복 시 신용제재, 명단공표 등 병행 중이나,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 미미

④ 행정적 한계 → 체불 사전예방 및 피해노동자 권리구제 애로

- 감독관은 사건처리에 매몰되어 진정사건 제기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 및 예방·지도 활동 여력 부족
 - 미신고된 잠재적 피해 노동자 실태 파악 등 적극적 권리구제 애로
-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 생활 안정에는 부족, 사업주의 체불 예방의욕 저하, 대지급금 회수율 감소* 등 한계 병존
 - * '25.6월 기준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 29.8%, 임금채권보장기금 고갈 가속화

II. 임금체불 근절 주요 대책

목표

정부 임기 내

- ✓ 임금체불 절반 감축 (2조원 → 1조원)
- ✓ 임금체불 청산율 95%

대책

'25년 내 단기 집중 핵심과제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예방감독 강화 | 체불 집중감독 - 100% + α |
| 2 체불 청산지도 | 발생한 체불은 신속 해결 |
| 3 선제적 지원 |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개편 |
| 4 노동자 보호 확대 | 지원은 강화, 변제금 회수는 확실하게 |
| 5 제재 강화 |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('25. 10월) |

- ✓ '25년 청산율 87% 달성
- ✓ '26년 체불 감소추세 전환의 전기 마련



구조적 임금 체불 근절

- 1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개선
 - 임금 구분지급 의무 법제화
 -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
- 2 업종·부문별 하도급 개선
 - 불법하도급 근절
 - 퇴직연금 의무화
 - 공공부문 하도급 개선



상습 체불 제재 강화

- 1 법정형 상향
 - 3년 이하 → 5년 이하
- 2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재범 제재 강화
 - 반의사불벌 적용제외 확대
 - 과태료·과징금, 징벌적 손해배상
- 3 공공재정 투입 제한
 -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 용자 제한



사회적 인식 개선

- 1 사업주의 준법경영 자정노력 유도
 - 체불 없는 일터
 -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
- 2 「임금 체불 = 임금 절도」 메시지 확산

추진체계

- ✓ 범정부 협의체
 - ➔ 이행 점검, 효과성 평가, 추가·보완사항 신속 추진
 - ※ 범정부TF(장관급) - 실무협의회 중층적 운영

① 단기 집중 핵심과제 ('25.下 4개월간 중점 추진)

① [예방감독 강화] 하반기 감독은 체불에 집중 - 감독물량 100% + α 투입

- (타겟팅 감독) “숨어 있는 체불*”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재직자 익명 제보 및 신고 사건 다수 사업장 등 감독 확대, 우선 감독 추진
 - * 재직자의 신고 어려움, 사건 당사자 중심의 권리구제 한계
- AI를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*하여 집중 감독 추진
고의·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
 - * 기업별 신고사건 내역, 4대 보험 체납, 입퇴사 현황 등 기업별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
- (부처 합동감독) ▲건설업 불법하도급 감독(국토부, 8.11~) ▲고액체불, 재산은닉자 파악시 국세청 통보, 체불시 타 분야 합동 감독 추진
- (지자체 협업) 지방정부와 「전국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」 실시
 - 체불 취약업체 밀집 지역(소규모 산단, 농촌 등), 지방정부 인·허가 분야(숙박·음식·보건) 중심 지자체 합동 「현장예방점검의 날」 시행(10월)

관계부처-지방정부 합동감독·점검은 첫 시도!

- ✓ '25년下, 既계획 감독물량을 약 2배 확대(1.5만 → 2.7만)
- ✓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합동 감독은 그간 추진하지 않은 첫 시도로 체불에 대한 새 정부 의지 표명 → 실효적 제재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

② [체불 청산지도] 발생한 체불은 신속·적확하게 해결

- (명절 연휴) 국민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체불 피해가 없도록 「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」 8월 말부터 선제적 확대 운영
 - * 언론, 제보 등으로 체불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 조사 즉시 착수·지도

체불 집중청산은 이렇게!

- ✓ [기간 확대] 체불 청산 기간을 명절 전에 확대 운영(3주 → 6주)
- ✓ [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기] 온·오프라인 신고 전담창구 + 「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」 중 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 선정·선제적 청산 지도
 - * 각종 정책융자 등 자금지원제도 활용하여 자발적 청산 유도 병행

- **(취약 노동자)**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등 사회 초년생 및 외국인 노동자 체불 적극 청산
 - ↳ 전체 체불액 중 10~20대 체불 9%(1천억원), 외국인 체불 7%(850억원)
-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,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체불 상담·지원

취약노동자의 체불 적극 청산

- ✓ **[청년 : 체불 없는 출발]** ▲식음료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등 10·20대 체불 다수 업종 적극 지도 ▲체불 사건 제기 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
- ✓ **[외국인]** 닿지 않는 현장까지 농촌, 도심 외곽 중심으로 지방관서에 「외국인 노동인권 신고·상담의 날」 운영

- **(체불 스왓팀 운영)** 집단 체불이 발생하거나,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, 건설 현장 농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청산 지도
 - ↳ (SWAT Team) **S**pecial **W**eapons **A**nd **T**actics Team

- 지방관서에서 경찰·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운영하여, 촘촘한 체불 동향 파악 및 적기 지도·대응 등 협조 체계 구축

고의·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!

- ✓ 청산 지도 과정에서 고의적·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적극 신청

③ [선제적 지원]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개편

- **(용자한도 확대)** 대규모 기업*은 사업 회복 가능성, 청산의지 및 계획 등을 심사**하여 용자 한도 확대(예시: 체불액 구간별로 최대한도 설정)

* 현행 한도 1.5억원은 실질적인 청산 지원 불가능 사례가 발생하는 점 등 고려

** 지방관서에서 매출발생 가능성, 구체적 청산 계획, 취약노동자 우선 보호계획 등 심사, 한도 확대 여부, 이자율의 차등적용(사업장규모 등 회수율 반영) 결정하는 방안 검토

- **(활용 제고)** 체불이 장기화되거나 형사 사건화되기 전 신속 해결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또는 청산지도 시 용자제도 안내 강화*

* 사업장 감독 시 사업주 대상 필수적으로 제도 안내,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및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등에 용자제도 홍보 리플릿 등 우편 발송

④ [체불노동자 보호 확대] 체불 노동자 지원 강화, 변제금 회수는 확실하게

- (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) 자체 체불청산이 어려운 도산사업장은 대지급금 범위를 '최종 3개월분 임금' → '최종 6개월분 임금'으로 확대(임금채권보장법 개정)
- (기금재정 건전화) 근로복지공단 내 '회수전담센터' 설치, 노무사·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하고 회수율 제고방안* 마련·추진
 - * 국세체납절차 준용 등 회수절차 개선, 사업주 변제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, 관계부처 협업 통한 사업주 숨은 재산 발굴 등
- 기금재정 건전화를 통해 체불노동자 보호기반 안정화

⑤ [제재 강화] “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”(개정 근로기준법) 시행에 만전

- (개정 내용) '25.10.23.부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따른 신용제재,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*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
 - * 자연이자(연 20%) 재직근로자 적용 확대, 명단공개 사업주 반의사불벌 제외 및 출국금지, 징벌적 손해배상(3배 이내) 청구 등 제도화
- (법 시행 사전준비) 효과적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집중 홍보
 - 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의 구체적 기준 등 시행령 개정(4.8. 공포)
 - ② 사업장 감독시 개정법 안내 및 현수막 게시·홍보 팸플릿 교부
 - ③ 노동부 유튜브,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개정 내용 게시(3편 시리즈) 등



- 유튜브, SNS 등 일반인 노출 비율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광고 지속 → 경제적 제재 등 개정법상 불이익에 따른 심리적 제어 효과 유도
- (현장 파급력 강화) 법 시행 후 체불사업주 제재 사례홍보로 일벌백계

① **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개선**

- **(임금 구분지급)**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(근로기준법 개정), 이를 반영한 **표준하도급계약서** 개정·보급
 - 건설·조선 등 구분지급 관행이 정착된 업종부터 우선 추진('26.上), 실태조사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적용 업종 단계적 확대
- **(발주자 직접지급)**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'전자대금지급시스템'*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 확대하고 이를 **활용할 수 있도록** 추진
 - * 하도급지킴이(조달청), 상생결제시스템(중기부), 체불e제로(철도공단) 등

《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대금지급 흐름도 》



- 건설 노동자의 전자카드* 출퇴근 정보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하는 방안** 확대

* 노동자의 실명, 출퇴근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퇴직공제부금 산정에 활용하는 전자카드(「건설근로자법」 공공건설 1억원, 민간건설 50억원 이상 활용 의무화)

**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시범사업 운용 중('21.3월~)

② **업종·부문별 하도급 개선 및 퇴직금 체불 예방**

- **(불법하도급 근절)** 건설업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**(공공부문 구조 개선)** 철도·도로 등 공공부문 도급단가, 인건비 비중, 체불 발생 원인 등 실태조사 →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방안* 마련
 - * 공공부문 필수적 인건비 예산 소요의 신속반영 등
- **(퇴직연금 의무화)**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퇴직금 체불(총 체불액의 40%)을 개선

* (현행) 퇴직연금/퇴직금 중 선택 → (개선 예)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, 사외적립 의무화

① 법정형 상향

-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을 고려,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→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('25.下)
- * 현재 기소사건 중 구약식 종결 비중 83%('23년)
- 실질적 제재를 위한 구형기준(검찰) 및 양형기준(법원) 상향 협의

②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재범 제재 강화

- (명단공개 대상 확대) 체불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*으로 확대 방안 고려
- * 일시적 경영난 이후 신속한 체불청산 등 사정 고려 및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체불총액 3천만원 요건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불급한 대상 선정
- (신용제재 대상 확대)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병행, 신용제재* 대상도 확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시 활용
- * 명단공개와 동일하게 3년 내 2회 유죄확정 요건
- (재범 제재 강화) 명단공개 후 재체불 행위는 불법성에 비례한 제재 강화

재범 제재 강화방안


- ✓ [반의사불벌 개선] 명단공개 후 재체불행위의 반의사불벌 제외
→ 일괄적 형벌 적용으로 체불 재범행위 엄단
- ✓ [과태료·과징금] 명단공개 후 재체불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도입하여 즉시 제재로 실효성 강화 방안 병행
- ✓ [징벌적 손해배상] 일정 요건(예: 미청산 비율 등)에 따라 고의 체불자를 구체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제외에 따른 청산 지연 예방

③ 체불 미청산 기간 중 공공재정 투입 제한

- 고액 등 불법성이 높은 체불행위는 1회라도 체불임금의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융자, 보조·지원사업 등 제한
- *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체불로서 조기 체불청산 노력 등을 소명한 경우,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은 허용

④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① [중소사업주 중심 지정노력] 노사 모두 도움되는 준법경영 노동부중기부산업부

- (준법경영 지원) 중소기업·소상공인, 산업·업종별 협·단체 중심으로 장기간 체불 발생이 없고 근속 비율이 높은 사업장 발굴
 - * [ 일본] 상공회의소, 노동 관련 컨설팅 회사, 로펌 등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·사용자에게 준법경영을 안내하고, 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 수행
 - 포상행사 등 명예고취 프로그램 운영, 자체 지원사업 우선 배정하고, 소상공인 대상 임금체불 예방 교육*을 통한 사업주 인식개선 추진
 - * 근로기준법·노동관계법 등 체불 예방을 위한 온·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
- (체불 없는 일터)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(예: 알바몬·잡코리아)등과 협업하여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를 구직자*에게 제공
 - *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효과, 신규 취업자의 체불피해 사전방지 등 기대
 - 중소·영세사업주 등의 참여를 통해 '체불 없는 일터' 공론화·확산
- (체불사업주 정보 접근) 표준근로계약서의 QR로 명단공개기업 여부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 체불 사업주 정보의 접근성 확대 추진

② [기초노동질서의 핵심은 임금체불] 임금 체불 = 임금 절도

- (메시지 전파) “임금체불은 임금절도, 사회적 재난” 등 체불 근절 메시지 콘텐츠를 유튜브 등 SNS, 주요 공업단지 등 온·오프라인 전파
 - 기초노동질서* 집중 캠페인과 연계하여 대국민 메시지 접촉 강화
 - * ①임금체불 예방, ②최저임금 지급, ③서면 근로계약 체결, ④임금명세서 교부
- (현장소통) 현장방문, 노사·전문가 참여 간담회 등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불 근절 노력 지속

Ⅲ. 추진 계획

① 추진체계 :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

- 종합대책 이행점검·평가, 실태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상황에 대한 부처간 공유 등 범부처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
- 「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」(정책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)와 「실무협의회」(제도개선, 합동점검 등)로 세분화

구 분	구 성
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(의장) 고용노동부장관 ▲ (구성) 기재부, 과기부, 법무부, 산업부, 국토부, 중기부, 공정위 등 소관 부처 차관
실무협의회 (노동정책실장 주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(구성) 고용부(주재) 및 소관 부처 국장

② 체불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

- (입법사항) 하위법령*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,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
 - * 사업주 용자범위 확대(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) 등
- (예산사항)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
- (이행점검) 「실무협의회」를 통해 추진 일정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및 협조 요청사항 논의
- 임금체불 데이터를 선진화하고 다층적 분석으로 추가·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유관 부처 논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1. 단기 집중 핵심과제		
① 예방감독 강화		
▶ 익명제보 등 감독 확대, 부처합동 감독 추진	노동부, 국토부	'25.下
▶ 전국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	노동부, 지자체	'25.下
② 시기·대상별 맞춤형 체불 청산지도		
▶ 명절연휴 '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' 운영	노동부	'25.8~10월
▶ 청년·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	노동부, 지자체	'25.下
▶ 체불 스왓팀 운영	노동부, 지자체, 경찰청	'25.下
③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개편		
▶ 용자한도 확대	노동부	'25.下
▶ 용자제도 홍보 강화	노동부	'25.下
④ 체불노동자 보호 확대		
▶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방안 마련	노동부	'25.下
▶ 기금재정 건전화	노동부	'25.下
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('25.10.23)		
▶ 법 시행 사전준비(시행령 개정 및 각종 홍보)	노동부	'25.4월~
▶ 상습체불사업주 실제 제재 사례홍보	노동부	'26.3월~
2.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		
① 하도급 내 임금지급제도 개선		
▶ 임금 구분지급의무 법제화	노동부	'25.下
▶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·보급	공정위	'26.上
▶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민간 확대	노동부, 국토부, 중기부	'25.下

추진 과제	담당부처	일정
② 업종·부문별 하도급 개선 및 퇴직금 체불 예방		
▶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마련	국토부, 노동부	'25.下
▶ 공공부문 하도급 개선	관계부처 합동	'25.下
▶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	노동부	'27~'30년

3. 상습체불 제재 강화로 경각심 제고

① 법정형 상향

▶ 법정형 상향	노동부, 법무부	'25.下
▶ 구형, 양형기준 합리화	노동부, 법무부	'26.上

②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재범 제재 강화

▶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	노동부, 법무부, 금융위	'26.上~
▶ 재범 제재 강화	노동부, 법무부	'26.上~

③ 공공재정 투입 제한

▶ 공공 보조·지원사업 참여 제한	노동부, 중기부	'26.上~
▶ 정책자금융자 배제	노동부, 중기부	'26.上~

4.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① 중소기업주 중심 자정노력

▶ 우수사업장 명예고취 프로그램 운영	노동부, 산자부, 중기부	'26.上
▶ 채용정보 플랫폼 등에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 제공	노동부	'26.下
▶ 표준근로계약서상 QR로 명단공개기업 여부 확인	노동부	'26.上

② 기초노동질서 집중 캠페인 실시

▶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현장소통	노동부	'25.下~
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

□ '24년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,

최대치를 기록하였던 '23년(1조 7,845억 원)보다 2,603억 원 증가

○ (총괄) '25년 6월 체불액은 전년 동기 比 5.5% 증가,
체불 노동자는 9.5% 감소

▶ ('25.6월) [체 불 액] 1조 1,005억 원으로 전년 동기(1조 436억 원) 대비 5.5% 증가
[체불인원] 136,134명으로 전년 동기(150,503명) 대비 9.5% 감소

- 청산율은 85.5%(청산액 9,404억 원)로 전년 동기 대비 6.6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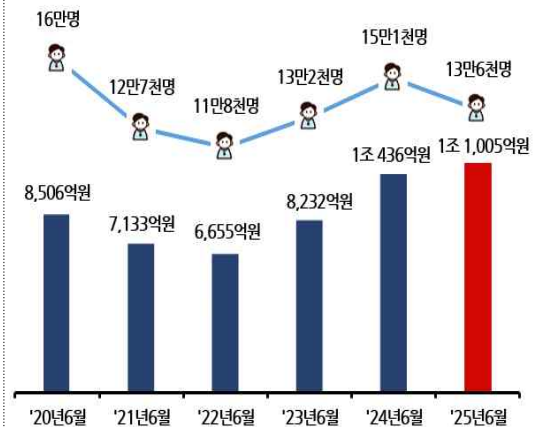
▶ (6월 기준 청산율) ('21) 85.2% → ('22) 88.0% → ('23) 79.5% → ('24) 78.9% → ('25) 85.5%

【연도별 총괄표】

(단위: 억 원, 명)

구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.6월
체불발생	15,830	13,505	13,472	17,845	20,448	11,005 (5.5% ↑)
체불인원	294,312	247,005	237,501	275,432	283,212	136,134 (9.5% ↓)
청산액	12,544	11,308	11,352	14,112	16,697	9,404 (14.2% ↑)
청산인원	275,768	245,793	231,780	263,274	267,681	128,476 (11.2% ↓)
미청산액	3,286	2,197	2,120	3,733	3,751	1,601 (27.2% ↓)
미청산인원	18,544	1,212	5,721	12,158	15,531	7,658 (30.6% ↑)
청산율	79.2%	83.7%	84.3%	79.1%	81.7%	85.5% (6.6%p ↑)

【6월 연도별 체불현황】



○ (업종별) ① 제조업(3,015억, 27.4%), ② 건설업(2,292억, 20.8%),
③ 운수창고통신업(1,766억, 16.0%), ④ 도소매음식숙박업(1,282억, 11.7%) 順

* (전년 동기 比 증감률) 제조업(5.0% ↑), 건설업(7.5% ↓), 도·소매·음식·숙박업(5.7% ↓),
금융·부동산·사업서비스업(13.1% ↓), 운수·창고·통신업(56.6% ↑), 기타(15.4% ↑)

○ (규모별)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66.9% 발생

① 5~29인(4,080억, 37.1%), ② 5인 미만(3,278억, 29.8%), ③ 30~99인(1,809억,
16.4%), ④ 100~299인(1,105억, 10.0%), ⑤ 300인 이상(725억, 6.6%) 順

* (전년 동기 比 증감률) 5인 미만(8.6% ↓), 5~29인(2.6% ↑), 30~99인(9.6% ↑),
100~299인(55.0% ↑), 300인 이상(45.7% ↑)

1 **신설** 경제적 제재대상 상습채불사업주 기준 마련(제43조의4제1항)

- (적용요건) 직전연도 1년간 ①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& 체불총액 3천만원(퇴직금 포함) 이상
* 사업주가 사망.파산.도산 또는 채불임금 전액 청산한 경우 등은 제외
- (절차) 대상사업주 추출 → 3개월 이상 소명 →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(제외사유) 및 확정 → 경제적 제재

2 **개정+신설** 상습채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

- ① **개정** (신용제재)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→ 금융기관에서 대출·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활용(제43조의3 개정)
- ② **신설** (정부지원 등 보조.지원 제한) 국가·자치단체, 공공기관 보조·지원사업(지원금 등) 참여·지원 제한(제43조의4 신설)
- ③ **신설** (공공입찰 시 불이익) 국가·지방계약법 上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, 낙찰자 결정 시 감점 등(제43조의4 신설)

3 **개정**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(제109조제2항)

-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(3년) 중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
* 명단공개사업주: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+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

4 **신설**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(제43조의7)

- 고용노동부 →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→ 채불임금 지급 시 해제 요청
* 형사재판, 벌금이나 국세 등 체납, 병역기피, 양육비 미지급 등 출국금지 제도 운영 중

5 **신설**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(제43조의8)

- (청구요건)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③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

